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497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정준호 · 양부남 · 안도걸
조인철 · 이연희 · 맹성규
이건태 · 정진욱 · 전진숙
민형배 · 박군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연극·영상·무용·미술·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편,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기반을 구축하며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두고 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둠(안 제2조).
-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 마.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인 중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바.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3조).

사.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 함(안 제15조).

아.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① 예술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 본다.

② 예술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교류하여 예술 관련 학술·학문·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술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 외에 교직원을 둔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⑤ 교직원 및 겸임교원 등의 임명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각 원) ① 예술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이하 “각 원”이라 한다)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원은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으로 한다.

③ 각 원 및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각 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정하고,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정한다.

④ 원장은 총장의 명을, 학과의 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각 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대학원) ① 예술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창조적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장기 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생의 정원) ①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장애인 중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각 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입학자격) ① 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예술학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술학교의 각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예술학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 원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1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술영재 및 외국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학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연한 등) ①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예술학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각 원과 대학원의 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 교육 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5조(예술영재교육) ①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예술학교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시설의 지원) 총장은 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예술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재정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학교 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교육관계법률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로 본다.

제3조(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의 학생으로 본다.

제4조(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의 교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가 승계한다.